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33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권영세 · 김재섭 · 서천호
윤재옥 · 김기웅 · 이인선
최수진 · 조정훈 · 신성범
최보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법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고,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인수·변제 금액의 손금산입 및 채무감소액의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재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7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7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변제 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 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 다)에 따라 <u>2026년 12월 31일</u> 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 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 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 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 국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 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 입한다.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변제 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 ----- ----- ----- ----- ----- <u>2029년 12월 31일</u> ----- ----- ----- ----- ----- ----- ----- ----- -----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